

해 양 재 난 구 조 대 의 설 치 및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안

법 제 처 심 사 전

1. 제정이유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조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11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해촉 절차,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의 내용 및 경비지원, 장비의 무상대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안 제2조)

해양재난구조대는 각 해양경찰서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면적·행정구역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0조)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해촉 및 경비·재해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안 제19조)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원에 대하여 연락망 현행화, 지급품목 관리 등 관리·지원을 하도록 하고, 매년 10시간 이상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라. 경비의 지급(안 제20조)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지원범위는 출동수당과 교육·훈련수당으로 그 지급기준과 절차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를 따르도록 함

마. 장비의 무상 대여(안 제21조)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구조·구급·통신 장비, 구조정, 구조지원 차량, 교육·훈련 기자재 등을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재난구조대는 각 해양경찰서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면적·행정구역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해양재난구조대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은 관할 해양경찰서의 명칭을 따른다. 다만, 2개 이상의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기념행사 등)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념행사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재난

구조대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제10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명단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잠수·선박·해양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구난·조선·해양·수산 관련 회사·단체·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 해양경찰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만, 재직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난구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사유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소집명령에 정당

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신규 위촉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해촉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다만,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촉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 및 소속 해양재난구조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조(조직의 구성)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선박구조, 수중구조, 수상구조, 항공수색, 응급의료 및 행정지원, 봉사 및 홍

보 등 해양재난구조대 구성원의 특기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담당 사무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조직의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8조(대장 및 부대장 등)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대장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해양재난구조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 ①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과 부장 및 반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실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 활동실적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그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2. 해양재난구조대에서 5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위원
 5. 법조인, 언론인 또는 시민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6.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⑦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운영위원의 장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⑨ 해양경찰서장은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제8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⑩ 제1항 및 제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조(중앙, 광역해양재난구조대협의회의 운영) ① 해양재난구조대간의 자율적 봉사활동을 증진하고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은 전국 단위의 중앙해양재난구조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각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광역해양재난구조대 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중앙, 광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류 및 협력한다.

1. 해양재난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해양 재난현장의 구조·지원 활동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등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건전한 발전과 해양재난구조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는 광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고, 광역협의회는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 내 해양재난구조대의 대장, 부대장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 광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2.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⑤ 중앙, 광역협의회에 각각 회장, 부회장을 두되,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중앙협의회의 회장, 부회장은 각 광역협의회의 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2조(임무)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 및 해상에서의 지역 축제,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재난 발생에 따른 주민 생활의 안전을 위한 피해복구 지원 활동
3. 연안해역에서의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 지원
4.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업무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지원
5. 수난구호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6. 그 밖에 수난구호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복장)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은 별표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지급한다.

- ③ 복장의 착용기간에 관하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4조(복장 착용 등의 예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복장 착용 및 신분증 소지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조난사고 등 재난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우
2. 복장 및 신분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착용 및 소지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임무 수행의 특성상 복장 착용 및 신분증 소지가 불필요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신분증명서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전자신분증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6조(대장의 보고사항)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장이 해양경찰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개요(일시, 장소) 및 사고를 인지하게 된 경위
2. 피해 현황(인적, 물적)
3. 수난구호 등 관련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
4. 그 밖에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

제17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복장 착용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 활동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의 위탁)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 업무를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다.

제19조(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의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지원을 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 수행 등에 필요한 인원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관리
2. 복장 지급, 장비 대여 등 지급품목에 대한 관리
3. 재해보상 등을 위한 보험 가입 지원

4. 대원증, 각종 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5.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훈련을 매년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조난사고 유형별 수색·구조·구난 방법

2. 수난구조활동 관련 안전에 관한 사항

3. 해양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에 필요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0조(경비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동수당

2. 교육·훈련수당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는 경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장비의 무상대여)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구조·구급·통신장비 및 개인 안전보호장비
2. 구조정, 구조지원 차량
3. 구조·구급 관련 교육·훈련 기자재
4. 그 밖의 집기 및 사무용품 등

②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1항에 따른 구조장비 등 물품을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운용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장비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2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로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양재난구조대와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매년 선발하여 포상하고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구조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을 각각 “해양재난구조대원”으
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을 “(해양재난구조대원
의 처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
다.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 (시행규칙 제13조(복장) 관련)

1. 복장의 종류

구분	종류
1. 제복	○ 기동복(상·하의) ○ 하계 활동복(상·하의) ○ 점퍼 ○ 조끼 ○ 래시가드
2. 모자	○ 활동모(캡형, 정글형)
3. 부속물	○ 허리띠 및 버클 ○ 이름표
4. 신발	○ 단화 ○ 기동화

2.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

종류			수량	사용 기간	지급대상	비고
제 복	기동복	동복 (상·하의)	1	3년	해양재난구조대원	
		하복 (상·하의)	1	3년	해양재난구조대원	
	점퍼		1	6년	해양재난구조대원	
	조끼		1	6년	드론수색대	
모 자	활동모(캡형)		1	3년	해양재난구조대원	드론수색대 제외
	활동모(정글형)		1	3년	드론수색대	
신 발	단화		1	3년	해양재난구조대원	
	기동화		1	3년	해양재난구조대원	드론수색대, 서프구조대 제외

■ (해양경찰청)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해양재난구조대 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사 진 (3cm×4cm)	소속 파출소		
	주소 (거주지에서 선박까지 도달 시간 포함)		
	성명	주민번호(수당지급·보험가입을 위함)	
	성별 () 남 / () 여	직업	전화번호

신청분야	() 선박구조	() 수중구조	() 수상구조	() 서프구조
	() 항공(드론)수색	() 응급의료	() 행정지원	() 기타(봉사 등)

선박 및 구조장비 <보유시>	선박보유자()		장비보유자()	
	선명 / 선종		장비종류	(예시) 드론, 서프, 카약 등
	선적지 / 톤수	/	장비규격	

자격면허 및 주요경력	취득일 및 기간	내 용	취득일 및 기간	내 용

해양경찰청의 해상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O해양경찰서에서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수당 지급, 복장지급 및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 생년월일, 선박정보, 자격면허, 경력, 계좌번호, 교육훈련사항, 성별, 신체치수	「해양재난구조대법」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 관리, 수당 및 복장지급, 단체상해 보험 가입	해양재난구조대원 위촉 시부터 해촉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원 등록, 대원관리, 교육훈련, 수당 및 복장지급,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_____ 미동의 _____

■ 제3자(의류업·보험업자, 복장지급·보험가입 대행 수탁기관) 제공

항 목	이용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신체치수	「해양재난구조대법」에 따른 복장지급, 단체 상해보험 가입	해양재난구조대원 위촉 시부터 해촉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원 복장지급,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_____ 미동의 _____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OO해양경찰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위 촉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재난구조
대원으로 위촉합니다.

2025년 월 일

0 0 해양경찰서장

직인

해양재난구조대원증

(앞 면)

(뒷 면)

해양재난구조대원증 사진 (30mm×40mm) 성 명 해양재난구조대 O.I. ○○해양재난구조대	발급번호 소속 : 직위 : 성명 : 분야 : 생년월일 : 발급년월일 발급기관장 (인) 발급기관 전화번호
--	--

구분	내용
재질	대원증의 색상은 백색으로 하고,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제작 양식	1. 신분증의 크기는 가로 54mm × 세로 85.6mm로 한다. 2. 앞면 성명 아래에 금색으로 해양재난구조대 표지(가로 35mm × 세로 20mm)를 인쇄한다. 3.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크는 가로 30mm×세로 40mm로 한다.
관리	1. 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신분증이 오염·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동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2. 해양재난구조대원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대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3. 직위란은 대장·부대장·부장·반장·반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해양경찰청)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해양재난구조대원증 발급대장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해양재난구조대원 경력(재직)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소속	직위	비고
	부터	까지			
경력기간	년 월		용도		

위와 같이 경력(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직인

해양재난구조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소속	성명	생년 월일	재직 기간 (년월)	용도	통수	취급자	비고